

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5.04.01.
 개정 2019.04.29.
 개정 2019.09.30.
 개정 2024.10.07.
 개정 2025.03.10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혁신센터 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본교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교육과정 편성과 인증에 관한 업무

1.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
2. 교양 및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
3. 무경계전공제 운영에 관한 업무

②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

1.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업무
2. 평가 전반의 관리 및 운영 업무
3.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업무

③ 교수(Teaching) 지원업무

1.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등 조사 연구
2. 교수자 수업 전문성 향상 및 수업 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, 운영, 평가 지원
3. 교수지원 운영 프로그램 사업성과 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 지원
4. 기타 교수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사항

④ 학습(Learning) 지원업무

1.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등 조사 연구
2. 학생 학습역량 강화,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, 운영, 평가 지원
3. 대학 핵심역량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진단 및 평가, 결과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환류
4. 학습지원 운영 프로그램 사업성과 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 지원
5. 기타 학습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사항

⑤ 원격교육지원업무

1. 원격교육 환경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

2. 원격교육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관리, 평가, 운영 지원
3. 원격교육 운영사업 성과 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 지원
4. 기타 원격교육지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
⑥ 강의평가업무

1. 강의평가 문항 관리 및 실시 지원
2. 강의평가 운영 성과 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
3. 기타 강의평가 업무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
⑦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는 센터장과 소속 교수,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,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,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혁신센터에서 담당한다.

- ② 스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 및 심의하기 위하여 스쿨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회의 사무는 각 스쿨 행정실에서 담당한다.

제5조(교육과정혁신위원회 구성 및 활동)

- ①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육과정 총괄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스쿨별 1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.
 1. 교육과정 정책 수립
 2.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(개편), 인증제에 관한 사항
 3.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4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6조(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)

- ①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교원 및 학생 포함 14인 이내로 구성하되,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②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수지원,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교수지원,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
3. 교수지원, 학습지원프로그램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수지원, 학습지원 프로그램 관한 사항

제7조(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)

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3조의1, 제3조의2에 의거하여 구성 및 활동한다.

제8조(스쿨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)

① 스쿨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는 스쿨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스쿨 소속 교원과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스쿨(전공) 교육과정 정책 수립
2. 스쿨(전공)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
3. 학점 및 강의시간(수)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